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 기각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¹⁾

1. 사건개요

(1) 청구인의 출생 당시 주민등록 및 성전환 과정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 불가리아 Stara Zagora 시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 주민등록부에 여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름이 기재되었으며 성별 역시 여성으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청소년기 때부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남성으로 자각하였고, 이에 따라 남성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며 남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지속하였다. 2008년부터 청구인은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여, 기증자의 도움으로 인공수정을 하여 그 여성이 2010년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서로를 부자관계로 인식하였고, 2011년 11월에 발급된 청구인의 신분증 증명사진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2014년 5월 28일에 시행된 의학감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남성으로 자각하는 완전한 성별도착(性別倒錯)에 빠져 있었다. 2014년 청구인은 성전환의 일환으로 외과수술을 통하여 유선과 실질세포를 제거하였다.

(2) 제1차 소송

청구인은 2015년 Stara Zagora 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이라 함)에 불가리아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소송에서 주민등록부상의 이름(prénom)과 성(patronyme), 성씨(nom de famille), 성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자정보 변경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1) Affaire Y.T. c. Bulgarie, Requête n° 41701/16 du 9 juillet 2020.

증명하기 위하여 상기한 2014년 5월 28일자 의학감정서 및 2014년에 받은 외과수술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21일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방법원은 본안 전 판단에서 청구인이 불가리아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한 절차가 실제로는 동법 제73조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은 의학감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의심의 여지없이 성전환자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성전환에 대한 본안판단에서 불가리아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6조는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미 등재된 주민등록부상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은 청구인은 출생 당시 신체적으로 여성이었으므로 남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에 청구인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성의 표기 역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제2차 소송

청구인은 1심 결과에 대하여 Stara Zagora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이라 함)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6년 2월 19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법원은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남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의학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의사로써 성전환 외과수술을 받은 것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남성의 성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외과수술이 진정으로 사람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외양과 체형만을 바꿀 뿐이다. 사람의 사회심리학적 열망만으로는 성별정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법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부상의 성별전환의 실현만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주민등록부 기재변경청구 기각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반하는 국가의 부당한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2020년 7월 12일 사건이 접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의학적으로 성전환 수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및 2016년 3월 8일, 두 명의 성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두 의사는 확정판결 및 이에 따라 변경된 신분증이 제출되어 성별의 전환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청구인에게 필요한 모든 수술적 조치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중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2. 관련 국내법 규정

(1) 불가리아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

1999년 7월 5일 시행된 1999년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등록법’) 제9조는 불가리아 영토에서 출생한 불가리아 국적자의 성명은 이름, 성, 성씨로 구성되고, 이 세 요소는 모두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과 성씨는 부(父)의 이름과 성에 출생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접미사 -ov/-ev 혹은 -ova/-eva를 추가하여 짓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父)의 이름이 이러한 접사화가 불가능한 이름이거나, 이러한 이름들이 가문 내지 부모의 민족적, 종교적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3조 내지 제14조).

제19조는 이름, 성 및 성씨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청구인의 이름이 특별히 모멸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공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청구에 의하여 개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저장된 전자파일, 특히 주민등록부와 판결문의 경우 시 당국에 의하여 갱신된다고 규정한다. 신상정보의 경우 디지털 형식으로, 모든 자연인의 개별 정보, 즉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파일로 저장된다(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출생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성명을 포함한다(제45조 제1항).

주민등록부의 기재에 대한 변경은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명과 성별 등 일부 정보는 오로지 법적 절차를 통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제73조 및 제76조). 민사소송법전 제28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성명변경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불가리아 개인신분증서에 관한 법률

‘1999년 개인신분증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성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새로운 신분증 발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0년 신분증발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신분증의 재발급에 있어 성별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부에 그러한 성별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불가리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오로지 성별, 인종, 민족, 유전, 국적, 출신, 종교, 학력, 신념, 정치적 성향, 나이, 성적 지향, 가족 혹은 재산상황, 이외 국내 법률과 불가리아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특성에 따른 불이익한 대우 또는 차별을 ‘직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성적 취향’은 예시조항으로, 성전환을 포함한다고 한다.

3. 성전환 관련 불가리아 국내 판례

(1) 성별변경청구에 관한 선례

불가리아 국내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주민등록부를 포함하는 공적 기록 및 공문서에서의 성별변경청구에 대한 선례가 존재한다.

대다수의 판례는 주민등록법 제73조에 따른 일반사법심사의 방법으로 성별 변경청구를 검토하였다. 두 개의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42조 및 제547조에 의거하여 비송절차로 검토하기도 하였다.²⁾

오직 하나의 사건에서 국내법원은 성별변경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는 Stara Zagora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한 것으로, 당해 단독판사는 이 사건 청구인의 성별변경청구를 심리한 판사와 동일인이다. 위 각하판결은 불가리아 국내법이 성명변경청구의 경우와 달리 성별변경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었고, 성명변경청구는 주민등록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심리하였다.³⁾

동일한 해에 상기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제반사정으로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성명변경청구의 경우 성과 성씨의 형성은 성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성명변경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⁴⁾

성별변경청구에 대하여 국내법원은 다양한 견해를 취하였다.

일부 법원은 사람의 심리적 자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성전환과 관련된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거나 외과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⁵⁾

한편 법원은 당사자에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외과수술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⁶⁾ 이 경우 법원은 주민등록부상의 성별기재 변경청구의 인용이 외과수술에 따른 성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논지에서 몇몇 판결은 당사자가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거나 외과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별변경청구를 기각하였다.⁷⁾

2) решение от 15.06.2011 г. на РС - Пазарджик по гр.д. № 343/2011 г., et решение № 34 от 15.03.2013 г. на СРС по гр.д. № 23230/2012 г.

3) определение от 02.05.2007 г. на РС - Стара Загора по гр.д. № 469/2007 г.

4) решение № 127 от 20.12.2007 г. на РС - Стара Загора по гр.д. № 469/2007 г.

5) решение от 14.12.2000 г. на СРС по гр.д. № 4566/2000 г.; решение № 1666 от 27.05.2009 г. на РС - Варна по гр.д. № 9012/2007 г. ; решение № 330 от 04.02.2015 г. на РС - Пловдив по гр.д. № 2707/2014 г., et решение № 4263 от 16.12.2015 г. на РС - Пловдив по гр.д. № 8987/2015 г.

6) решение от 28.10.2011 г. на СРС по гр.д. № 5262/2011 г., решение № 8000 от 3.11.2016 г. на СГС по в.гр.д. № 5037/2015 г., et решение № 2186 от 03.06.2016 г. на РС - Варна по гр.д. № 711/2016 г.

7) решение № 1835 от 11.06.2007 г. на РС; Варна по гр.д. № 1953/2007 г., решение № 58 от 23.04.2014 г. на СРС по гр.д. № 11927/2014 г; решение от 11.02.2016 г. на СГС по в.гр.д. № 19280/2014 г., решение № 6899 от 19.05.2016 г. на СГС по в.гр.д. № 3213/2015 г., et решение

(2) 성별변경청구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불가리아 대법원은 2017년 1월 5일 판결⁸⁾에서 “불가리아 법률은 성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민등록부는 주민등록법 제73조 이하에 의하여 당사자의 삶에 따라 정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별의 원 기재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당해 판결은 또한 “성명정정과 달리 성별정정의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별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별정정요건을 도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한편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외양을 변경하는 외과수술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청구인의 성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성별이 야기하는 심리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것”이 성별정정청구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반대의견은 불가리아 법률이 출생 당시 성별과 상이한 성별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성별의 변경이 특정 성별에 대한 소속감 등의 심리상태에 근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성별정정청구의 심리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사인의 이익 간의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4.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불가리아 국내법원이 주민등록부상의 성별과 이름, 성 및 성씨의 정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유럽인권협약

№ 21538 от 21.12.2016 г. на СРС по гр.д. № 6417/2016 г.
8) решение № 205 от 5.01.2017 г. на ВКС по гр. д. № 2180/2016 г., III г. о.

제8조9)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스스로를 성전환자로 자각하며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기를 원하였다. 청구인은 수술에 의한 생식기관의 불능화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전 제128조10)를 근거로 들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만 성별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성별정정청구를 국내법원이 기각한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일반규정에 의거한 것인데, 이 법률은 성별정정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모순되는 판결을 내리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제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국내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성별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은 유럽인권재판소의 *A.P., Garçon et Nicot* 판결의 요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피청구인 정부의 주장

피청구인 정부는 청구인이 성명정정청구를 한 것이며 국내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에 관한 부분만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국내법원의 선례를 예로 들며 국내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행사하였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전환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전환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국내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9)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①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에 필요하여 법률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한다.”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증보), 경인문화사, 2008, 619.

10) 불가리아 형법전 제128조는 타인에게 중상해를 가하여 그 타인의 생식기능의 불구를 야기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 판단

(1)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여부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불가리아 국내법원이 주민등록부상의 성별 정정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청구인의 남성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합치하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법제도가 부재하여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이 사건이 국가의 적극의무뿐만 아니라 “부당개입”과도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본질적으로 공권력의 자의적인 부당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가 부당개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의무에는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에 내재된 적극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된 국가의 적극의무와 소극의무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전자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후자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러한 적극의무 또는 소극의무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¹¹⁾

유사한 사안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성별정정청구 기각과 관련된 사건들을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적극의무의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다.¹²⁾ 인정된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면, 이 사안의 선결문제는 심판대상조항 및 청구인과 관련된 판결이 국가가 청구인의 사생활, 특히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극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일반원칙은 상술한 *Hämäläinen* 판결에 정리되

11) *Söderman c. Suède* [GC], n° 5786/08, § 78, CEDH 2013.

12) *Hämäläinen c. Finlande* [GC], n° 37359/09, CEDH 2014, §§ 62-64; *A.P., Garçon et Nicot c. France*, nos 79885/12 et 2 autres, § 99; *S.V. c. Italie*, n° 55216/08, §§ 60-75, 11 octobre 2018; *X c. l'ex-République yougoslave de Macédoine*, §§ 66-71.

어 있다.

한편, 상충하는 이익 간의 균형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의 측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피청구인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한된 재량권을 행사하곤 하였다.¹³⁾

그러므로 이 사안의 선결문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에 관하여 불가리아 공화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불가리아 법률이 성별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불가리아 주민등록법 제73조 및 제76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조항은 행정절차가 아닌 오직 사법절차만을 통하여만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정을 차별금지대상으로 지정하는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등 불가리아 내국법 조항들은 성별정정의 결과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성별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조항의 불완전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국내법원은 이미 불가리아 주민등록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성별정정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게다가 불가리아 국내 사법절차가 2000년 이후 발전하였고 1999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법원은 성별에 관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부상의 특정 부분의 정정을 허용하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일반절차에 입각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국내법원은 성별정정청구와 관련하여 단 하나의 사건에서만 본안판단을 기각하였다. 이 유일한 경우는 2007년 사건으로, 이 사건과 대략 9년의 격차가 있으며 성별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서도 곧바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¹⁴⁾

13) *Hämäläinen*, §§ 67; *A.P., Garçon et Nicot*, § 123; *S.V. c. Italie*, § 62.

14)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X c. l'ex-République yougoslave de Macédoine* 사건에서 피청구인 정부(구 유고슬

이렇듯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제도는 청구인의 성별정정청구 자체를 적법하게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의학적으로 성전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외과수술을 감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및 이에 따라 변경된 신분증이 제출되어 성별의 전환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오로지 성전환을 완료하기 위하여 외과수술을 받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신체적 특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외과수술을 받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신체에 대한 존중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는지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¹⁵⁾

그러므로 불가리아 국내법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를 기각한 것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국내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적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소견서와 사회 및 가족과 관련된 청구인의 생활방식을 참고하여 청구인을 성전환자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국내법원은 주민등록부상의 성별정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처분불가성, 안전의 보장 및 민법상 지위의 일관성, 그리고 사법적 안정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이 성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엄격한 절차로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¹⁶⁾

청구인의 성별정정청구에 대한 국내법원의 기각결정은 의견이 분분한 주장을 참고한 것이며, 크게 세 가지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먼저, 국내법원은 출생 당시부터 실제 성별과 반대되는 신체적 특징이 있지 않은 한 성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법원은 사람의 사회심리학적 열망만으로는 성전환 요청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법원은 불가리아 국내법이 현재 사법제도 하에서 그러한 성

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가 성별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입법적 공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15) *S.V. c. Italie*, § 65.

16) *A.P., Garçon et Nicot*, § 142; *S.V. c. Italie*, § 69.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마지막 근거와 관련하여, 불가리아 지방법원이 성전환 수술과 관계없이 성별전환을 인정한 선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국내법원은 청구인이 신체적 외양을 바꾸는 성전환 수술을 거쳤으며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사회적 및 가족적 정체성은 남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사법절차를 통한 성별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국내법원은 이러한 공공의 이익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고,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성별전환에 대한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남성성을 주민등록부상의 성별과 일치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어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청구인의 성별전환에 관한 엄격한 판단이 청구인을 비상식적이고 지속적인 기간 동안 무력감, 치욕 및 불안감으로 점철된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렸음이 인정된다.¹⁷⁾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2015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제출한 2017년 1월 5일자 불가리아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면, 이 판결에서는 성별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환은 불가리아 법제도 하에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관습을 인정하고 있다. 당해 재판부에는 위 판결에서 언급하는 불가리아 내에서의 성별전환 요건 전반이 유럽인권협약에 합치하는지 판단할 권한이 있지 않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가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신 판결을 고려하는 바, 회원국이 공문서상의 이름과 성별에 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하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는,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와 위원회의 및 국제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7) *Christine Goodwin, c. Royaume-Uni* [GC], n° 28957/95, §§ 77-78, CEDH 2002-VI.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법원이 충분하고 적절한 고민 없이,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 성별정정이 허용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청구인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이 인정된다.

(2) 손해와 배상¹⁸⁾

1) 유럽인권협약 제41조 적용

유럽인권협약 제41조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계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필요하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정당한 만족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손해

청구인은 성전환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10,000유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가 근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럽인권협약 위반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7,500유로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4. 주문

- (1)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을 결정한다.
- (2)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을 인정한다.
- (3)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럽인권협약 제44조 §2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일 당시의 피청구인 국가의

18)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의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지급청구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생략한다.

통화 환율로 변환한 금액을 지급한다.

(i) 7,500유로(정신적 손해로 청구 가능한 금액)

(ii) 4,150유로(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

b) 지급기일 다음날부터는 3% 및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와 동일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유럽인권재판소법 제77조 §§2 및 3에 의하여 불문으로 작성되어 2020년 7월 9일에 공포한다.